

## 퇴직연금제도의 도입 필요성

근로자의 퇴직금 수급권 보호와 급속한 노령화 시대의 노후생활 자금 마련을 돕기 위해 2005년 12월 부터 퇴직연금 제도가 도입되었습니다.

### [퇴직금 수급권보호]

기존 퇴직금 제도는 퇴직금 재원을 사내유보 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므로 기업 도산시 근로자의 수급권이 보호되기 어렵습니다. 반면 퇴직연금제도는 근로자를 수익자로 하여 퇴직금 재원을 금융기관에 별도 보관하므로 회사의 도산여부와 관계없이 수급권이 보장됩니다.



### [변화하는 노동환경]

짚은 이직과 중간정산, 조기퇴직 등으로 퇴직금이 노후생활 자금 형성으로 연결되지 않고 생활자금으로 소진된 경우가 많아 퇴직금이 노후 소득재원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퇴직연금제도에서는 개인형 퇴직연금(개인형IRP)를 통해 퇴직금을 통산하여 노후생활 자금으로 적립 할 수 있습니다.

### [노후생활 자금마련]

고령화 · 저출산의 급속한 진행으로 은퇴후의 생활은 점차 장기화되어가는 반면, 노년층을 부양할 수 있는 젊은 세대의 인구는 감소하고 있어 노후생활에 대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준비가 필요합니다.

### 〈 노사 모두를 위한 경남은행 퇴직연금 〉

 <p>〈회사(사용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퇴직연금 부담금 납입액이 손비로 인정되어 법인세 절감 효과가 있습니다.</li> <li>· 정기적(매월, 매분기, 매반기, 매년)으로 부담금을 납부하여 비용부담이 평준화 되고, 퇴직금 관련 비용에 대한 예측 및 재무관리가 용이합니다.</li> <li>· DC의 경우 부담금 납입액을 비용으로 인식하고, 퇴직급여충당부채를 인식하지 않으므로 부채비율이 개선되어 재무건전성이 향상됩니다.</li> </ul>
 <p>〈근로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금융기관이 퇴직금 지급재원을 관리하므로 근로자의 퇴직금 수급권이 강화됩니다. (회사의 폐업, 도산 시 근로자가 직접 금융기관에 퇴직금 청구 가능)</li> <li>· 이직/퇴직시의 퇴직금을 과세이연 혜택을 받으며 개인형 퇴직연금(IRP)를 통해 계속 적립하여 은퇴자금 형성이 가능합니다. 추가 개인부담금을 납부하여 세액공제 혜택을 받고 다양한 연금 설계가 가능합니다.</li> </ul>

## 퇴직연금제도의 종류와 특징

### ■ 확정급여형(DB)제도

퇴직연금 운용성과에 관계없이 근로자의 퇴직급여가 기준임금과 근속기간에 따라 결정되는 퇴직연금제도

- 퇴직급여 = 퇴직시 기준임금 × 근속기간
- 기준임금은 30일치 평균임금으로 평균임금이란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
- 적립금 운용주체 : 사용자

▷ 매 사업연도 말을 기준으로 재정검증을 실시한 후 적립부족에 해당할 경우 가입자에게 안내 드립니다.

## ■ 확정기여형(DC)/기업형IRP제도

사용자는 매년 1회 이상 정해진 납입주기에 따라 연간 임금총액의 1/12이상을 가입자 계정에 지급하고 퇴직연금 운용성과에 따라 퇴직급여가 달라지는 퇴직연금제도

- 퇴직급여 = 기업부담금 납입원금 + 운용손익
- 기업부담금 : 가입자별 연간임금총액의 12분의 1
- 적립금 운용주체 : 가입자

### ▷ 부담금 납입지연 시 가입자에게 안내 드립니다.

부담금 납입예정일을 기준으로 1개월 이상 기업부담금의 납입이 없는 경우 가입자의 E-mail, SMS, 우편으로 직접 안내 드립니다.

### ▷ 부담금 지연납입 시 지연이자가 발생합니다.

확정기여형(DC)/기업형IRP제도를 도입한 사용자가 퇴직연금 규약 등에서 정한 기일까지 부담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지연이자(연 10~20%)가 발생하며 이를 가입자의 퇴직연금계좌로 납입하여야 합니다.

\* 지연이자 제외사유 : 사업장의 회생절차개시, 파산선고, 법령상 제약으로 자금확보가 어려운 경우 등

## ■ 개인형퇴직연금(IRP)제도

퇴직급여제도(퇴직금제도/퇴직연금제도)에서 퇴직급여를 수령한 근로자 또는 소득이 있는 취업자가 퇴직급여 또는 개인부담금을 노후자금으로 활용하기 위해 가입하는 퇴직연금제도

## 중도인출/담보대출

제도종류	중도인출	담보대출*
확정급여형(DB)	불가능	불가능
확정기여형(DC)	가능	불가능
개인형IRP	가능	불가능

\*퇴직연금제도의 급여를 받을 권리는 아래의 중도인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와 가입자 본인 또는 그 부양가족의 대학등록금, 혼례비 또는 장례비를 부담하는 경우에 정해진 한도 내에서 담보제공이 가능합니다. 단, 담보대출은 관계부처 협의 중으로 현재 실시 되고 있지 않습니다.

### ■ 법정 중도인출사유 [관련법령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제14조]

1. 무주택자인 가입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 구입시
2. 무주택자인 가입자가 주거 목적으로 전세금/임차보증금 부담시 (한 사업장에 근로하는 동안 1회 限)
3. 가입자 또는 그 부양가족이 6개월 이상 요양시
4. 최근 5년이내 가입자가 회생절차개시 또는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5. 천재지변 등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개정(2020.04.30 시행예정)으로 6개월 이상 요양시 지출금액과 상관없이 허용되던 중도인출이 가입자가 연간임금총액의 12.5%를 초과하여 소득세법 시행령상 인정되는 의료비※를 부담한 경우로 제한될 예정입니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의 5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의료비

## 퇴직급여 지급절차

퇴직연금 가입자의 퇴직급여는 가입자의 개인형퇴직연금(IRP)으로 의무이전됩니다.  
단, 아래의 경우에는 가입자가 개인IRP로의 이전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 < 퇴직급여 개인IRP 의무 이전 예외사유 >

- ① 만55세 이후 퇴직하는 경우
- ② 퇴직금이 300만원 이하인 경우
- ③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7조 제2항에 따라 급여를 담보로 대출받은 금액을 상환하는 경우

### ■ 퇴직급여 지급절차

1. **퇴 직 자** 퇴직급여 수령용 **개인IRP 가입 후** 사용자에게 퇴직신청
2. **사용자(기업)** 퇴직연금사업자에게 급여지급신청
3. **퇴직연금사업자** 개인IRP에 세전 퇴직금 지급
4. **사용자(기업)** 확정급여형(DB) 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는 관할세무서에 퇴직소득세 과세이연 신고**
5. **퇴 직 자** 개인IRP에서 연금 또는 일시금 신청하여 급여수령

### ■ 개인IRP 이전 시 효과

1. **퇴직소득세 과세이연**  
퇴직금을 개인IRP로 이전시 퇴직소득세는 일시금 또는 연금 수령시 까지 과세이연 됩니다. 즉, 세금까지 재투자 하는 효과가 있어 세후 퇴직급여를 운용하는 것보다 실질 운용손익이 증가합니다.
2. **운용손익 과세이연**  
개인IRP에서 적립금 운용시 이자소득세 또는 배당소득세의 과세 없이 운용되며, 일시금 또는 연금 수령시까지 과세이연 되어 실질 운용손익이 증가합니다.
3. **연금수령시 퇴직소득세 절세**  
개인IRP에서 연금 수령시 이연퇴직소득세의 30%~40%를 절세할 수 있습니다.

#### TIP!

#### 퇴직금을 '현금'으로 받았을 경우, 세금 절약 방법

- |        |   |
|--------|---|
| STEP 1 | 퇴직금 '수령 60일 이내'에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가지고 금융기관을 방문하여 IRP계좌 개설 |
| STEP 2 | IRP계좌에 퇴직금 입금후 퇴직소득세 환급신청                               |
| STEP 3 | 원천징수한 '퇴직소득세'는 확인절차 후 회사가 IRP계좌로 입금                     |



퇴직금을 개인형 퇴직연금(IRP)으로 이체하고, 연금 수령을 신청하면 기존 세금의 **30~40% 절감**

## 자산운용의 일반적 원칙

개별금융상품의 수익(Return)은 위험(Risk)과 비례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기대수익이 높으면 그만큼 손실발생의 위험이 높아지고 기대수익이 낮으면 그만큼 발생하는 위험도 낮아지게 됩니다. 자산 운용 시 장기투자과 분산투자 원칙을 지키면 위험은 줄이면서 더 높은 수익을 거둘 수 있습니다.

### ■ 장기투자

주식·펀드와 같이 수익변동성(위험)이 큰 상품에 투자할 경우 장기간 투자하면 수익변동성이 줄어들고 투자수익이 재투자되어 복리효과를 최대화할 수 있습니다.

### ■ 분산투자

- 투자시기의 분산 : 일정기간 동안 투자금을 나누어 투자하는 적립식은 투자 타이밍을 분산시킴으로써 “쌀 때 많이”, “비쌀 때 적게” 매수할 수 있어 평균 매입단가를 낮추는 효과가 있습니다.
- 투자대상의 분산 : 한 가지 금융상품에 투자하는 것 보다 위험과 수익 특성이 다른 상품으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면 기대수익률을 높이는데 있어 투자위험은 낮출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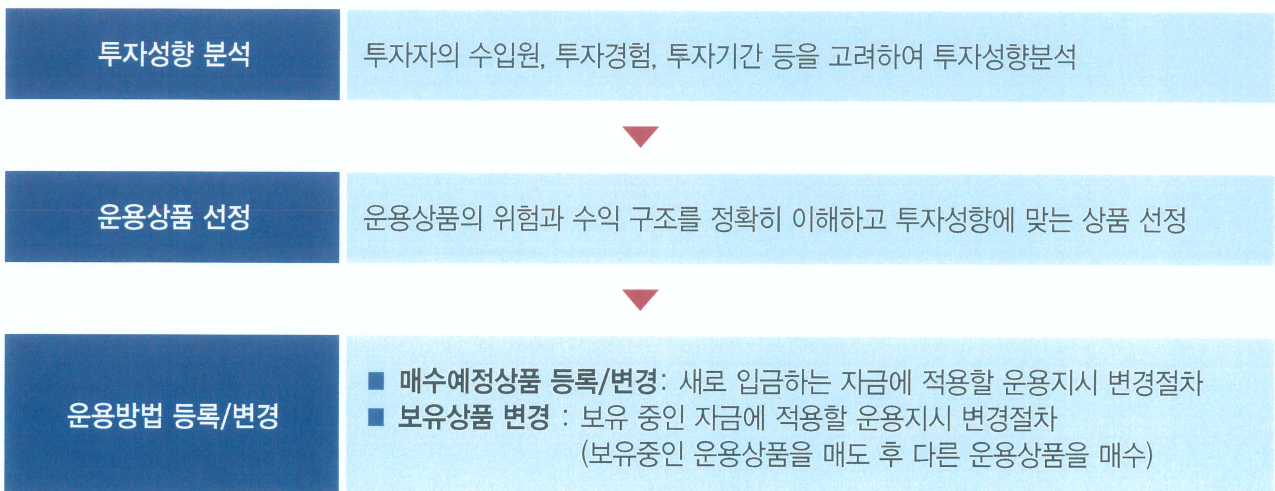
## 자산운용방법

퇴직연금 자산은 사용자(또는 가입자)가 선택한 운용방법에 따라 운용됩니다. 수익률은 낮지만 위험이 없고 확정금리를 제공하는 원리금보장형 상품을 선택할 것인지, 수익률은 높지만 위험이 수반되는 실적배당형 상품을 선택할 것인지 투자성향에 따라 신중하게 선택하여야 합니다.

### ■ 자산운용의 주체

- 확정급여형(DB) : 사용자
- 확정기여형(DC)/IRP : 가입자

### ■ 자산운용방법



※ 운용방법 등록/변경은 경남은행 영업점 또는 인터넷/모바일뱅킹에서 조회·변경 가능

〈투자자유형에 따른 투자가능상품〉



운용상품종류

※ 「퇴직연금 상품제안서」 또는 「경남은행 홈페이지(www.knbank.co.kr) - 금융상품몰 - 퇴직연금 - 퇴직연금상품 메뉴」를 활용하시면 보다 많은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원리금보장형 상품(정기예금)

원금과 이자가 보장되는 원리금 보장상품이며 부담금 납입시 고시되는 이율을 적용하여 정해진 만기(3개월, 6개월, 1년, 2년, 3년)에 원금과 이자가 지급되고, 만기 도래시 최초 계약기간 단위로 자동만기 연장됩니다. 원금과 이자가 보장되는 원리금 보장상품이더라도 은행별, 만기별 적용이율이 다양하므로 입금하시기 전 적용이율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예금자보호 안내

- 확정급여형(DB) 퇴직연금 : 이 퇴직연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호공사가 보호하지 않습니다.
- 확정기여형(DC), 개인형퇴직연금(IRP) : 이 퇴직연금은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으로 운용되는 적립금에 한하여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 한도는 귀하의 다른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과는 별도로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단, 2개 이상 퇴직연금에 가입한 경우 합하여 5천만원까지 보호합니다.

■ 실적배당형 상품(수익증권)

불특정 다수의 투자자로부터 모집한 자금을 자산운용회사가 주식 및 채권 등 다양한 자산에 분산 투자하고 운용수익을 투자자에게 돌려주는 상품입니다. 집합투자증권(펀드)의 경우 퇴직연금제도 수수료와 별도로 펀드에서 정하는 판매수수료, 운용보수, 환매수수료 등이 부과되며, 기준가격, 수익률, 기본정보 등은 경남은행 홈페이지 또는 금융투자협회 전자공시서비스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위험자산 투자한도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및 관련 감독규정에서 투자위험이 큰 것으로 정한 위험자산은 정해진 한도 내에서 운용할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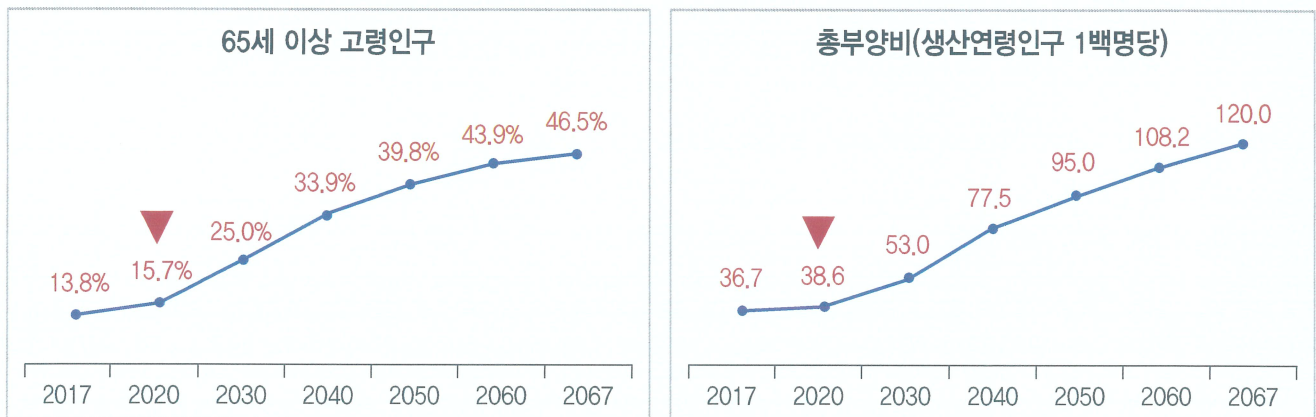
- 확정급여형(DB) : 사용자별 전체 적립금의 100분의 70
- 확정기여형(DC)/개인형퇴직연금(IRP) : 가입자별 전체 적립금의 100분의 70

■ 웰스타로보(WealSTAR Robo)

수익증권 투자가 처음이시거나 상품 선정이 어려우신 경우 로보어드바이저(Robo-Advisor)가 제안하는 포트폴리오 투자를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웰스타로보(WealSTAR Robo)가 고도화된 알고리즘과 금융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고객님의 투자성향에 맞는 최적의 포트폴리오를 제안하여 드립니다.

## 노후설계의 중요성

고령화·저출산의 급속한 진행으로 은퇴후의 생활은 점차 장기화 되어가는 반면, 노년층을 부양할 수 있는 젊은 세대의 인구는 감소하고 있습니다. 2019년 발표한 통계청의 장래인구특별추계(2017년~2067년)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2025년경 고령사회를 넘어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할 전망이며, 생산연령인구 1백명당 부양해야 할 인구인 총 부양비는 2056년에는 100명을 넘어설 전망입니다.



※ 자료출처 : 통계청 장래인구특별추계(2017년~2067년)(중위시나리오)

※ 초고령화 사회: 65세 인구가 총인구의 20% 이상을 차지하는 사회

경제적 준비 없이 오래 사는 리스크 즉, 장수리스크(longevity risk)에 대비 하기 위해서 생애 주기 별 발생하는 이벤트와 주요 재무 목표를 사전에 고려하여 노후생활에 대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준비가 필요합니다. 국민연금(기초적인 생활)· 퇴직연금(표준적인 생활)· 개인연금(여유로운 생활)의 3층 연금 구조를 활용하여 생산가능시기에 필요 노후자금에 대해 미리 준비 하시기 바랍니다.

생애주기	미혼기	신혼기	자녀출산·양육기	자녀학령기	자녀성년기	자녀독립 및 은퇴기
라이프 이벤트	- 대학진학 - 경제적독립준비 - 취업 - 자동차구입 - 결혼	- 새로운 경제 생활에 적응 - 주택마련	- 자녀출산·양육 - 새로운 가족원과의 경제생활에 적응 - 주택 마련	- 자녀진학	- 자녀의 대학진학 - 자녀결혼 - 조기퇴직	- 은퇴 - 가족원의 죽음 - 건강관리 - 상속준비

주요 재무목표	- 경제적독립준비 - 결혼자금 마련	- 결혼자금 마련 - 주택자금 마련	- 자녀교육자금마련 - 주택구입 또는 확장자금 마련	- 자녀 사교육비 - 자녀 대학등록금 준비 - 주택구입 또는 확장자금 마련	- 자녀 대학등록금 - 은퇴생활준비	- 은퇴생활영위 - 상속준비
------------	------------------------	------------------------	------------------------------------	--	---------------------------	--------------------

※ 금융감독원, 생애주기 별 금융교육 가이드라인

## 제도중단 또는 폐지 시 처리방법

### ■ 퇴직연금제도 중단

퇴직연금제도가 중단되는 경우에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 제1항에 따른 퇴직금제도가 적용되며, 사용자와 퇴직연금사업자는 동법 시행령 제39조에 따른 기본적인 업무는 유지하여야 합니다.

#### 〈사용자의 기본적인 업무〉

- ① 가입 근로자에게 제도 중단 사유 및 중단일, 재개시(再開始) 일정, 미납 부담금이 있는 경우 그 납입 계획 등 제도 중단기간의 처리방안 등의 공지 개시
- ② 가입자 교육의 실시
- ③ 급여지급의 요청, 적립금의 운용 등과 관련하여 법령 등에 규정된 업무의 이행을 위해 필요한 조치 등

#### 〈퇴직연금사업자의 기본적인 업무〉

- ① 가입자 퇴직 등에 따른 급여의 지급
- ② (가입자교육을 위탁 받은 경우) 가입자 교육의 실시
- ③ 급여의 지급, 적립금의 운용, 운용현황의 통지 등과 관련하여 법령 및 운용관리업무와 자산관리업무의 계약에서 정해진 업무 등

### ■ 퇴직연금제도 폐지

노사합의로 퇴직연금제도를 폐지하는 경우 적립금은 가입자의 개인형퇴직연금제도로 이전하고,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38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퇴직금을 중간 정산하여 지급한 것으로 봅니다. 사용자는 퇴직연금제도를 폐지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제도폐지에 대한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얻어 고용노동부장관에게 폐지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계약이전(계좌이체) 절차

#### 1) 퇴직연금 규약 변경신고

규약은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얻어 변경하고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신고·수리를 받아야 합니다. 다만, 개인형퇴직연금제도는 해당되지 않음.

#### 2) 신규 계약 체결 및 계약이전 신청

퇴직연금을 이전할 새로운 퇴직연금 사업자와 운용관리/자산관리 계약을 체결 하고, 계약이전 전 퇴직연금사업자에 계약이전을 신청합니다.



3) 가입자 정보, 적립금 정보 및 적립금 이전  
새로운 퇴직연금사업자에 가입자 정보, 적립금 정보 및 적립금이 이전됩니다.

4) 퇴직연금제도의 운영  
새로운 사업자가 해당 사업장의 퇴직연금제도를 지속적으로 운영하도록 해야 합니다.

#### 〈개인형퇴직연금(IRP) 계좌이체〉

소득세법에 따른 세액공제나 과세이연 등의 세제 혜택을 유지하면서 다른 연금계좌로 이전할 수 있습니다. 계좌이체 간소화 시행으로 가입자는 이/수관 금융기관 중 한 곳에서 계좌이체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계좌이체의 유형〉

- ① 개인IRP ↔ 개인IRP
- ② 연금저축 ↔ 연금저축
- ③ 개인 IRP ↔ 연금저축(연금수령요건\* 만족자만가능)

\* 연금수령요건 : 만55세 이상 가입기간 5년이상 (퇴직금이 포함된 연금계좌는 만55세 이상)

#### 〈계좌이체의 절차〉

- ① 계좌이체 받을 개인IRP 계좌개설
- ② 계좌이체 신청
- ③ 가입자의 계좌이체의사 확인 (전화 통화 또는 이체하는 금융기관 방문)
- ④ 이체하는 연금계좌의 운용중인 상품매도
- ⑤ 경남은행 개인IRP 입금완료

## 기업 도산시 퇴직급여 청구안내

퇴직연금 가입자가 근로하는 사업장의 폐업, 부도, 사실상 도산, 사용자의 행방불명 등 사업장을 통하여 퇴직급여를 지급받기 곤란한 경우 아래 서류를 구비하여 가입자가 직접 퇴직급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 구비 서류

- 1. 당해 사업장의 폐업, 부도, 사실상 도산 등 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 2. 퇴직급여청구자(퇴직연금가입자)의 퇴직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 ①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 또는
  - ② 고용보험 자격득실확인서(근로복지공단, ☎1588-0075)

### ■ 퇴직급여 지급액

- 확정급여형(DB)제도 : 금융기관에 등록된 최종 추계액 × 적립비율
- 확정기여형(DC)/ 기업형IRP 제도 : 해당 가입자 적립금

## 확정급여형(DB)제도 추가사항

### ■ 최근 3년간의 부담금 납입현황 (개별자료)

납입연차	납입기간	납입금액
직전 1년		
직전 2년		
직전 3년		

### ■ 최소적립금 대비 적립금현황 (개별자료)

기준일자	기준책임준비금		최소 적립비율	최소 적립금	평가 적립금	재정검증 결과	안정화 계획서작성
	기준일자	기준일자					

### ■ 재정검증

재정검증이란 사용자의 급여지급능력 확보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매 사업연도 말 기준으로 가입 사업장의 적립금이 법정 최소적립수준 이상인지 검증 하는 절차입니다.

퇴직연금사업자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16조에 의거 재정검증을 실시하여 그 결과를 사용자에게 알리고, 적립부족에 해당할 경우 그 결과를 근로자대표에게도 통지합니다.

#### 〈재정검증결과에 따른 조치사항〉

적립수준 <sup>주1)</sup>	재정검증결과	급여지급	조치사항
100% 초과 150%미만	적립초과	급여전액 지급	- 초과분은 향후 납입할 부담금 에서 상계가능
150% 이상	적립초과		- 150% 초과분에 대해 사용자 요청시 적립금 반환가능
최소적립비율('20년: 90%) <sup>주2)</sup> 이상 100% 미만	적정		-
최소적립금 <sup>주3)</sup> 이상	적정		-
최소적립금 <sup>주3)</sup> 미달	적립부족	적립비율 지급	- 재정검증결과 근로자대표 통보
최소적립금 <sup>주3)</sup> 의 95% 미달	적립부족		- 재정검증결과 근로자대표 통보 - 적립부족금액을 3년 이내에 균등하게 해소할 수 있도록 재정안정화계획서를 작성하고 근로자대표에 통보 및 3년간 보존하여야 함

주1) 적립수준: 평가적립금 ÷ 기준책임준비금

기준책임준비금: 사용자가 급여지급능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매 사업연도 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정한 금액 Max(계속기준금액, 비계속기준금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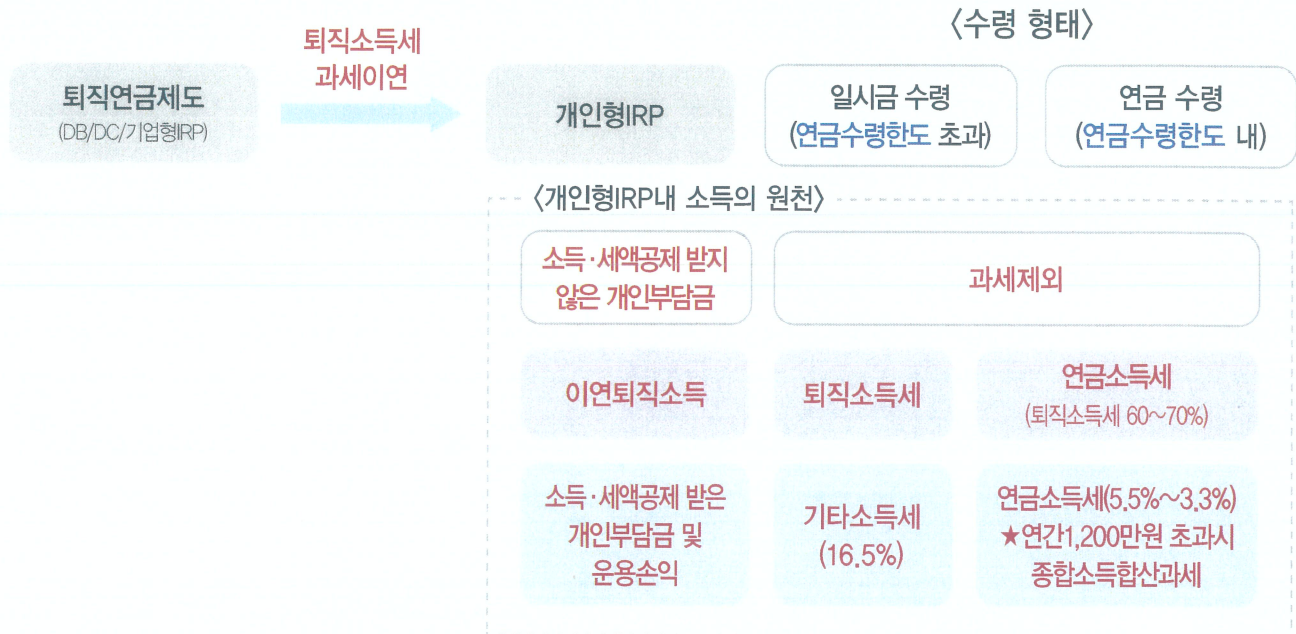
주2) 최소적립비율 : 2020년 90%, 2021년 이후 100%

주3) 최소적립금 : 가입기간 전체에 따른 최소적립비율 x 기준책임준비금

가입기간과 가입연차에 따라 해당 사업연도의 최소적립비율 보다 낮은 비율이 적용될 수 있음.

## 퇴직연금 과세체계

퇴직연금은 부담금의 납입과 운용 단계에서 과세를 이연하고, 급여 수령 단계에서 소득의 원천과 수령형태 (일시금 수령/ 연금 수령)에 따라 퇴직소득세, 연금소득세, 기타소득세로 과세합니다.



- ※ **연금수령한도** : 연금개시일 또는 매년1월1일의 연금계좌평균금액 ÷ (11-**연금수령연차**) × 1.2
- ※ **연금수령연차** : 최초로 연금 수령할 수 있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을 1차년도로 하여 그 다음 과세기간을 누적 합산한 연차를 말하며, 10년차까지 적용. 단, 2013.3.1 이전 가입한 연금계좌는 최초로 연금 수령할 수 있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을 6차년도로 하여 연금수령연차를 계산
- ※ **세액공제 받지 않은 개인부담금은 기타소득세 또는 연금소득세를 징수하지 않습니다.**  
**제출서류: 연금보험료 등 소득세액공제확인서 (국세청 홈택스 or 관할세무서 민원실 발급)**

### ■ 일시금 수령시 과세 (연금수령한도 초과금액)

일시금 수령시 퇴직소득은 퇴직소득세, 개인부담금과 운용손익은 기타소득세 16.5%로 과세합니다.

### ■ 연금 수령시 과세 (연금수령한도 내 금액)

퇴직소득을 연금으로 수령하면 실제연금수령연차 10년까지 퇴직소득세의 70%, 실제연금수령연차 10년초과시 퇴직소득세의 60%로 과세 되어 퇴직소득세의 30~40%를 절세할 수 있습니다. 연금은 소득세법 상 연금수령한도 내 금액을 의미합니다.

세액공제 받은 개인부담금과 운용손익은 연령별 연금소득세 5.5%~3.3%로 과세됩니다. 단, **연간 사적연금(퇴직소득을 연금으로 받는 금액 제외) 1,200만원 초과시 소득이 발생한 다음년도에 소득자가 종합소득 합산과세 신고 하여 세금을 정산하여야 합니다.**

\* 연령별 연금소득세 : 70세미만 5.5%, 80세미만 4.4%, 80세이상 3.3%

### ■ 퇴직소득세 계산방법

퇴직소득세는 입사일(또는 중간정산일)부터 퇴직일 까지 근속연수에 따라 ①**근속연수공제 후 환산급여**를 계산하고 ②**환산급여에 따른 차등공제**를 적용하여 과세표준을 계산 합니다. 해당 사업장에서 퇴직일 이전에 **중간정산(중도인출)**을 한 경우 이미 지급 받은 중간정산 금액과 합산 과세를 여부를 선택할 수 있으며, 이때 퇴직소득금액 구간에 따라 퇴직소득세의 유/불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퇴직급여	
(-) 근속연수공제	① 근속연수공제
환산급여 계산	환산급여 = (퇴직급여 - 근속연수공제) ÷ 근속연수 × 12배수
(-) 환산급여별공제	② 환산급여에 따른 차등공제
퇴직소득과세표준	퇴직소득과세표준 = 환산급여 - 환산급여별공제
퇴직소득세	퇴직소득세 = [퇴직소득과세표준 × 세율*] ÷ 12배 × 근속연수 * 퇴직소득과세표준 구간에 따른 세율

※ 근속연수 공제표

근속연수	공제액
5년 이하	30만원 × 근속연수
5년 초과 10년 이하	150만원 + 50만원 × (근속연수 - 5년)
10년 초과 20년 이하	400만원 + 80만원 × (근속연수 - 10년)
20년 초과	1,200만원 + 120만원 × (근속연수 - 20년)

※ 환산급여에 따른 차등공제표

환산급여	공제액
8백만원 이하	환산급여의 100%
8백만원 초과 7천만원 이하	800만원 + (800만원 초과분의 60%)
7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	4,520만원 + (7천만원 초과분의 55%)
1억원 초과 3억원 이하	6,170만원 + (1억원 초과분의 45%)
3억원 초과	15,170만원 + (3억원 초과분의 35%)

※ 세율표(지방소득세 별도)

과세표준	세율 및 세금계산
1,200만원 이하	6%
1,200만원 초과 4,600만원 이하	72만원 + (1,200만원 초과 금액) × 15%
4,6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	582만원 + (4,600만원 초과 금액) × 24%
8,800만원 초과 1억5천만원 이하	1,590만원 + (8,800만원 초과금액) × 35%
1억5천만원 3억원 이하	3,760만원 + (1억5천만원 초과금액) × 38%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	9,460만원 + (3억원 초과금액) × 40%
5억원 초과	17,460만원 + (5억원 초과금액) × 42%

※ 위 세제와 관련된 사항은 관련 세법 개정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